

◎ 得票率에 따른 比例代表 議席配分

○ 現行 : 있음

○ 改正黨 : 있음

○ 民主黨 新設 S42 ④

- 得票率에 따른 議席配分
의 소수 정당 반영 가능성
없음.

④ 比例代表制에 의한

議席配分은 法律이 定하는

바에 의하여 各 政黨의 得

票數의 比率에 따른다.

~~防止裝置 관련 필요~~

— 본래의 의미에서의 比例代表制는 全國 單位 또는 일정 地域單位의 選舉區에서 실시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小選舉區制 (전형적인 多數代表制) 또는 中選舉區制를 채택하면서 일부 議席만을 比例代表制로 選出하기 위하여 投票價値를 2種으로 계산하거나 (西獨式), 各 政黨別 地域區 議席數에 따라 議席數를 결정하기도 함 (우리나라 現行制度)

○ 第3共和國 당시 小選舉區制를 채택하면서, 投票價値를 별도로 計算하여 반영한 全國單位 政黨名簿式 比例代表制를 併行한 일이 있음.

* 당시 憲法에서는 比例代表制 채택근거를 두지 않음.

○ 選舉區 人口 平等問題

(大韓辯協案)

- 行政區域등을 고려하여 完全한 選舉區人口平等 實現義務 賦課는 곤란
- 選舉區別 人口編差의 上限을 정하는 方式도

있으나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가가 애매하고, 실제 與件에 合致하지 아닐 수가 있으므로 法律에 委任하도록 함.

* 現行 S42 ③ (改正 S40 ③) 같이 國會 議席의 選出에 比例代表에 比하여 若干의 議席을 附加한 후 法律로 정하도록 함이 바람직